<붙임 1>

2026학년도[농어촌학생전형(정원 외)]

[농 어 촌 학 생 전 형 추 천 서]

지원 모집단위		수험번호	
성 명		주민등록번호	
지원자격 표유형 □	본인이 농어촌(읍·면)에 거주하면서 농어촌(읍·면)소재 초.중.고등학교 전 교육과정(12년)을 모두 이수한 자 <부·모 거주조건 면제>		

재학사실		학 교 명	학교주소(정확한 주소 기입)	재학기간
	초			년 월 ~ 년 월
				년 월 ~ 년 월
	중			년 월 ~ 년 월
				년 월 ~ 년 월
	고			년 월 ~ 년 월
				년 월 ~ 년 월

위 학생을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을 갖춘 자로 인정하여 추천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작성자 : 담임(부장)교사 ㊞

학교전화번호 :

고등학교장 직 인

광주여자대학교 총장 귀하

※ 추천서 양식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(ipsi.kwu.ac.kr)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추천 시 주의사항

- 지원자격은 연속된 년 수만을 인정함
- 읍·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·면을 의미하며(광역시·도, 도·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·면 포함)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지역을 포함함
- **읍·면 소재 특수목적고교(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, 예술고, 체육고 등) 출신자,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 불가**
- 고등학교(중학교, 초등학교)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·면·도서·벽지 지역이 동 지역 또는 도서·벽지 해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고등학교(중학교, 초등학교)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을 읍·면·도서·벽지 지역으로 인정함
-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·면이나 도서·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되 동일한 읍·면이나 도서·벽지 지역이 아니어도 지원 가능함
- 지원자의 거주지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·면(도서.벽지지역)이 아니어도 됨
- 재학 중 교환학생으로서 외국 소재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는 경우, 학교장이 해당 프로그램의 배경을 설명하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해당 기간 농어촌 소재 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
- 졸업예정자의 경우 서류제출 마감이후 농어촌지역 계속 거주 및 재학여부는 합격자에 한하여 등록 이후 추가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졸업일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 및 재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

※ 전형취지부합도평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추가서류를 요청하거나 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